



( 1 / 1 )



# 납세증명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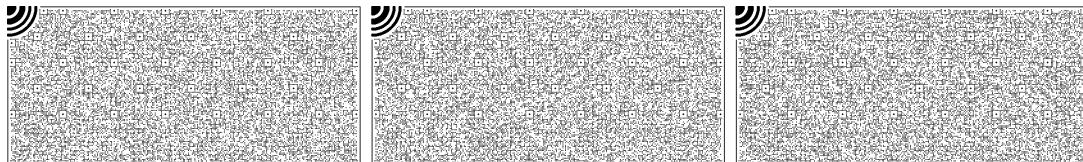
발급번호	2372-614-3421-293		처리기간	즉시(단, 해외이주용 10일)			
납세자 인적사항	성명(상호) 포보코리아 주식회사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119-86-50720				
	주소(사업장)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, B-107호(관양동, 에이스평촌타워)						
증명서의 사용목적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대금수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이주 (이주번호 제 _____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호, 이주확인일	년	월	일	
	유효기간	2026년 3월 4일					
증명서의 유효기간	유효기간을 정한 사유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96조 제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사유: _____)					
연장·유예 내역  (단위: 원)	연장·유예 종류	연장·유예 기간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산금
		해	당	없	음		
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 (단위: 원)	위탁자·양도담보설정자	과세기간	세 목	납부기한	세 액	가산금	
		해	당	없	음		

「국세징수법」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연장·유예액 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2조,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7조의2·제12조의2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양도담보권자 또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  
※ 발급일 현재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납국세는 체납액이 아니므로 증명 대상에서 제외됨.

접수번호	505032259781
담당부서	민원봉사실
담당자	
연락처	031-389-8226

2026년 2월 2일

동안양세무서장



\* 본 증명의 위·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「국세청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> 민원증명(증명발급) > 민원증명 원본확인」에서 발급번호로 확인,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 
(공문서를 위·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)

\* 본 증명은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에서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.